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22605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8. 4. 18.

판결 선고2018. 5.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345,425원 및 그 중 163,309,595원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가 2017. 5. 1. 체결한 증여계약을 10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 27.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원금은 161,5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27.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③ 보증료율에 연 5/1000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4. 10. 27.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10.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7. 8. 17. 부도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13. (주)농협은행에 163,309,595원(= 원금 161,500,000원 + 이자 1,809,5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858,85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176,980원이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바. 피고 B는 2017. 5. 1.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17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345,425원(대위변제금 163,309,595원 + 법적절차비용 858,850원 + 추가보증료 176,9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3,309,5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7. 12. 27.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14. 10. 27.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 B, C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3달 정도 지난 후인 2017. 8. 17. 피고 A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17. 11. 13.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의 소유인데 그 등기명의만 피고 B 앞으로 해둔 것이고, 피고 B가 자꾸 사업자금을 요구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C 명의로 환원한 것일 뿐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대로 피고 C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 피고 B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 및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7.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피고 C는 2017. 7. 14. 광주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갑 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287,5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만도 163,309,595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07,500,000원(= 시가 287,5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8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10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수영

별지